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3321번
-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안 일 : 2025년 10월 18일
- 회 부 일 : 2025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위원회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능 수행을 명확히 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및 해촉기준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에 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내용 명확화(안 제1조 ~ 제3조)
-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강화(안 제27조제6항 및 제7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청원법」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입법예고 (2025. 8. 21. ~ 9. 10.) 결과: 의견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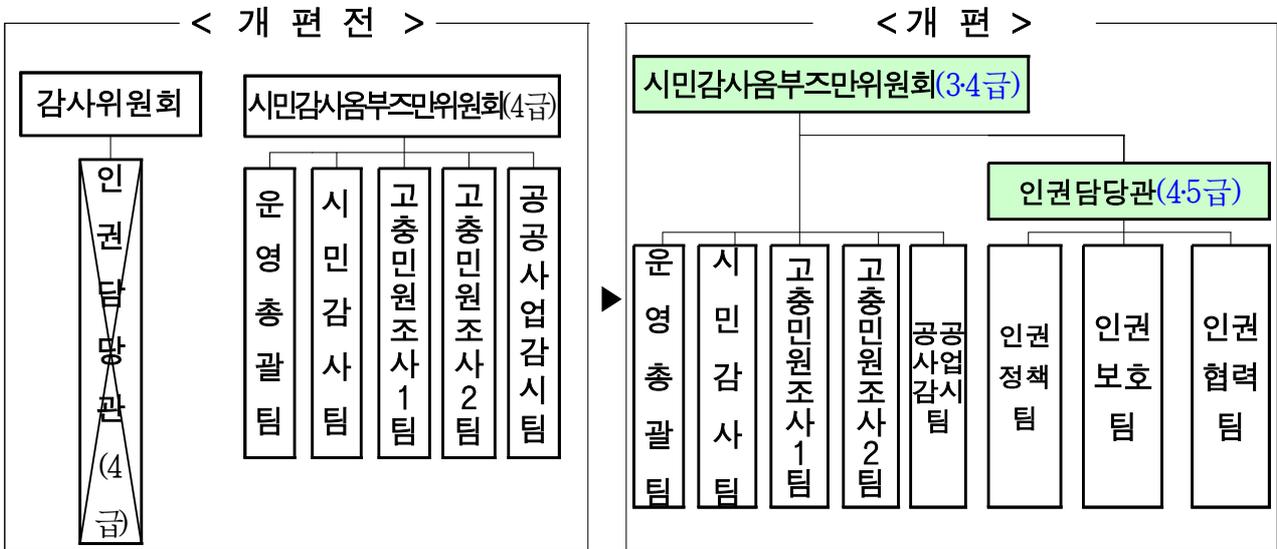
5. 검토 의견

가. 조례개정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본 개정안')은 조직개편(2024.7.1.)에 따라 '인권담당관'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본 위원회')로 이관되어, '인권담당관'의 역할과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개선하며,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과 해촉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의 해촉 요건(안 제27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정 감사·조사·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024.7.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직 개편>



<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

조 문	주 요 내 용
안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인권 분야 추가
안 제3조(설치 및 기능)	- 위원회 기능에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 등 신설 - 인권침해 조사 결과 관련 징계 처분요구, 적극행정 면책 사항 신설
안 제27조(자격 등)	- 시민참여옴부즈만 해촉 요건 신설
기타 조항	- 용어 및 띄어쓰기 등 문구 정비

나. 세부내용 검토

1) 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내용 반영(안 제1조~제2조)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안 제1조)과, 인권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6호)하여 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 2.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 3.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그 시행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청렴계약 이행”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5. (생략)

<신설>

5. (현행과 같음)

6.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현행 본 조례는 시정감시, 고충민원 조사, 주민 감사청구 관련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기존 역할에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이하인권 조례)에 따른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하려는 것이나, 본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개정안의 목적(안 제1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그 시행”과 정의(안 제2조), “인권”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조, 제2조)와 동일하여, 중복 조문의 신설이 필요한지 여부, 한쪽 조례가 개정되어, 두 조례가 상이하게 될 경우 혼동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와 본 위원회의 기존 기능(시민감사와 고충민원 처리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인권분야의 사무를 위원회의 업무로 병합·일원화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목적·입법취지·성격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또한, 본 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주민·시민감사, 고충민원 처리 등 기능에 인권 보호 기능이 추가될 경우 업무 혼동과 권한·책임 문제, 위원회 본연의 업무 소홀 또는 과부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인권담당관의 기능을 본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나, 인권침해의 판단 및 시정권고 등의 핵심권한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여 위원회간 권한 충돌을 방지하고, 인권보호 체계의 전문성 등을 유지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설치)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2) 인권침해관련 징계·면책 및 재심의 권한 신설 (안 제3조제2항)

- 안 제3조는 본 위원회에 인권침해 조사 결과 관련 징계 처분요구, 적극 행정 면책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정감사, 고충민원 조사,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른 <u>감사</u>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제3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u>감사,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 등</u> -----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감사·조사 및 공공사업 감시·평가의 계획과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2. 징계·징계부가금 및 문책,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 제도개선 등의 요구,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면책 및 재심의를 관한 사항
5.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8.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9. 시민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1. 감사·조사 및 공공사업 감시·평가의 계획과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2. 징계·징계부가금 및 문책,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 제도개선 등의 요구,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면책 및 재심의를 관한 사항
5.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8.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9. 시민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10. 인권침해 조사 결과 관련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 다음 각 호의 -----

----- .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2.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 중 제2항제10호 이외의 사항

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을 처리할 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안 제3조는 시민에게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본 위원회의 인권보호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될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제2항제10호(인권침해 조사 결과 관련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는 현행 제3조제2항제2호(징계·징계부가금 및 문책,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를 본 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9조의4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권한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안 제3조제2항제4호(적극행정 면책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는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면책 및 재심의 권한을 본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양위원회 간 권한 충돌 등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기능·역할 충돌 관련 상세 검토

·본 개정안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인권침해 조사결과에 대한 의결 권한(재심의·면책 등)을 부여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고유 권한과 직접적인 충돌 우려가 있음. 특히 타 위원회의 인권침해결정에 대해 다른 위원회가 재심의하는 구조는 위원회 간 권한 상하관계를 형성하여, 독립성·전문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인권침해 사건은 특성상 신속성과 인권보호 관점에서의 전문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나, 복수 위원회의 관여로 인해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책임 소재가 불명확 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구체적 검토는 다음과 같음.

1. 안 제3조제2항제10호는 인권침해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 제도개선 요구 및 적극행정 면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시정권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4의 체계와 충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인권침해 결정, 시정권고, 권고 사항 이행점검 등 인권구제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별도의 의결을 통해 재심의 또는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승인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 ①인권구제 체계의 이원화, ② 양 위원회 간 인권침해 관련 위상 역전, ③권한 침해·충돌, ④인권구제위원회의 형해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

3. 두 위원회를 규율하는 조례는 상하관계 또는 우선순위 적용 기준이 부재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두 위원회가 서로 상이한 의결을 하는 경우 어느 의결이 최종 효력을 가지는지 판단할 기준이 부재하여, ①시민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적 안정성 저해, ② 시민권리 구제기구 혼란, ③인권구제 과정이 반복·지연, ④ 상이한 결정이 누적될 경우 권리구제의 실효성 약화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인권침해 판단 및 시정권고 권한은 기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가 부여한 바에 따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유지하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안의 사전조사·행정조정·제도개선 의견 제시 등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권업무의 관할·분장 기준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하여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간 역할 중복 또는 권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 규범의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인권침해 사안의 최종 판단 주체를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각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간 중복 및 충돌 가능성 〉

구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충돌 가능성
설치 목적	시민 인권 보호 및 침해 구제	시정감사, 고충민원 조사, 시민·주민감사 청구 처리	-
조사 대상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위법·부당 행정 전반	관할 구분 필요
심의·의결 사항	인권침해결정, 시정권고 여부 등 (인권조례 제18조제2항 1~4호)	시정·개선 요구 권고·의견표명 (옴부즈만조례 제3조제2항 1~3호)	정책 개선·시정 요구 기능 중복
시정권고 권한	구제위원회가 시장에게 시정권고 (인권조례 제19조의4제1항)	고충민원 조사 결과 시장·제도개선 권고 가능 (옴부즈만조례 제19조제3항)	동일 사건 시 이중권고 가능성
시정권고 통지 및 이행 점검	대상기관은 조치결과 보고, 시장은 연1회 이행점검 (인권조례 제19조의4제2~5항)	시장 또는 위원회가 결과 확인·점검 가능 (옴부즈만조례 제20조제2항)	사후관리 기능 충돌 가능
재심의 기능	없음	적극행정 면책 및 재심의 의결 (개정안 제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옴부즈만조례 제3조제2항제4호)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타 위원회가 뒤집는 구조 발생
인권 관련 권한	핵심 기능	개정안으로 인권침해 조사결과 관련 의결권 추가 (개정안 제3조제2항제10호)	고유 기능 침범 우려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9조의4(시정권고 및 후속조치)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시정권고 사항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사대상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3) 위원장, 위원의 직권처리 권한 부여 (안 제3조제3항)

- 안 제3조제3항제2호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 중 제2항제10호 이외의 사항”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안 제3조제4항은 “제3항제2호의 사항을 처리할 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적 안전장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목적과 취지 보호에 관한 세부 검토

1. 안 제3조제3항제2호는 인권 관련 사항(제3조제2항제10호의 ‘인권침해 조사 결과 관련 의결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권업무)을 위원장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 관련 사안은 시민 권리구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직권 처리(안 제3조제3항)는 사안 판단에 있어 주관적일 수 있어, 직권처리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특히, 본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으로, ‘합의와 견제’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업무의 처리 주체가 위원장에게 집중될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집단적 판단)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또한 인권업무는 다른 기구(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등)와 상호 연계가 필요한 분야로, 위원장의 독임(獨任, 독임제, 단독 판단 구조)은 기관 간 연계·조정 체계의 장애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책임소재의 불명확 등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이에 위원장 직권 처리 범위를 최소화하고, 직권 처리의 요건과 절차를 시행규칙(또는 운영규정 등) 등과 같은 하위 규범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직권 처리된 인권사안에 대해서도 위원회 등(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보고 후 의회보고 등)에 사후보고 절차를 규정하는 등 합의제 행정기구의 기능을 유지·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강화 (안 제27조제6항 및 제7항)

- 안 제27조제6항 및 제7항은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불명확한 해촉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활동실적(안 제6항제2호)의 구체적 기준은 본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 ④ (생략) ⑤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위촉된 후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u>	제27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단서 삭제>

<신 설>

⑥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시민참여옴부즈만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촉된 후 1년 단위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시민참여옴부즈만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시민 참여옴부즈만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⑥·⑦ (생략)

⑦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제22조 및 제23조의 공공사업 감시·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⑦ 제6항제2호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⑧·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⑨ -----
----- 제8항 -----

-----.

- 안 제27조제6항은 의회에서 지적했던 위원의 저조한 참여율 및 실적을 개선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을 관리하고 위원의 청렴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위원을 해촉하기 위한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7조제6항제4호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시민참여옴부즈만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 “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 조문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시정(市政)에 비판적이거나 의견이 다를 경우 위원을 해촉하는 등 악용될 위험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27조제6항제5호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를 규정한 조문은 포괄적, 추상적 개념으로, 위원 해촉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촉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원 해촉이 필요한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해촉하는 등 시장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결을 훼손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자구 수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적용 등 (안 제2조제4호 등)

- 안 제2조제4호 등은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비문(非門)과 중복 표현을 개선하여 조례의 가독성·법체계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개정안 세부내역

안 제2조제4호 : “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안 제4조제2항제1호 : “재직한 자” → “재직한 사람”

안 제4조제2항제2호 : “자로서” → “사람으로서”

안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 “자” → “사람”

안 제4조제2항제5호 : “자로”, “있는 자” → “사람으로”, “있는 사람”

안 제7조제2항제8호 : “「청원법」 제5조” → “「청원법」 제5조”

안 제17조제2항제6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안 제22조제3항 : “제25조” → “제27조”

안 제26조제2항 : “범위 안” → “범위”

○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본 위원회로 이관된 사항(인권보호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목적·기능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책임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다만, 인권침해 조사결과 등(조사처리결과, 사후처리, 재심의 등)에 대한 의결권한을 본 위원회에 부여(안 제3조제2항제1호)하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중복 또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권침해 조사 구제의 절차 의결·사후처리 주체가 이원화(안 제3조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될 우려가 있고, 포괄적 직권 처리규정(안 제3조제3항)으로 인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운영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바,
- 직권처리의 역기능 방지 장치(위원장 직권 처리 범위를 구체화) 및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배분 등을 규정하는 방안(조례에 직접 규정 또는 시행규칙, 위원회 운영규정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김원진
------	-----	-------	-----